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74호

**성동구 마장동 339-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
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
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53호(2021.8.19.)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54호(2021.8.19.)로 사업계획 승인된 성동구 마장동 339-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,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, 제24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11일

서울특별시

I.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(변경)

- 명 칭 : 성동구 마장동 339-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39-2번지 일원
- 면 적(변경)
 - 기 정 : 3,448.9㎡
 - 변 경 : 3,448.2㎡ (감) 0.7㎡

■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변경사항	변경사유
-	성동구 마장동 339-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	· 구역 면적 변경 : 3,448.9㎡ → 3,448.2㎡	· 필지 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

2. 촉진지구 지정일(변경없음)

3. 사업의 종류(변경없음)

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(변경없음)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(변경)

1) 토지세목조서
[기정]

연번	소재지	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
	행정동	지번		성명	주소	지분	권리 명세	권리자	주소		
		본번								부번	
1	성동구 마장동	339	2	대	410.0	인트라스제1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	1/1	근저당	하나 캐피탈 주식 회사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20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
2		339	7	대	215.0			1/1			
3		339	21	대	66.0			1/1			
4		339	22	대	298.0			1/1			
5		341	8	대	105.0			1/1			
6		341	10	대	269.0			1/1			
7		795	6	대	1,076.0			1/1			
8		796	5	대	676.5			1/1			
9		796	8	도로	181.7	성동구	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7	1/1	-	-	-
10		809	3	도로	1,515.3			1/1	-	-	-
합계					4,812.5	3,448.9	-				

[변경]

연번	소재지		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
	행정동	지번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지분	권리 명세	권리자	주소
		본번	부번									
1	성동구 마장동	339	2	대	410.0	410.0	인트라스 제1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 유한회사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(역삼동, 하나금융 그룹 강남사옥)	1/1	근저당	북동신용 협동조합	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(북동)
2		339	7	대	215.0	215.0			1/1		신목신용 협동조합	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17 (신정동, 신협빌딩)
3		339	21	대	66.0	66.0			1/1		신우신용 협동조합	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2(의정부동)
4		339	22	대	298.0	298.0			1/1		대명신용 협동조합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54-1(응두동)
5		341	10	대	269.0	269.0			1/1		남광주신용 협동조합	광주광역시 남구 종암로 52(서동)
6		341	11	대	76.0	76.0			1/1		경남중앙 신용협동 조합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8길 1(석전동)
7		795	6	대	1,076.0	1,076.0			1/1		경동신용 협동조합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87(제기동)
8		796	5	대	449.0	449.0			1/1		남동신용 협동조합	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22(만수동)
9		796	11	대	227.5	227.5			1/1		구로신용 협동조합	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1(구로동)
10		796	8	도로	181.7	181.7	성동구	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7	1/1	-	-	-
11		809	11	도로	48.5	48.5			1/1	-	-	-
12		809	12	도로	131.5	131.5			1/1	-	-	-
합계					3,448.2	3,448.2						

2) 물건조서 : 변경없음

■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- 마장동 341-8번지, 796-5번지, 809-3번지 필지분할 - 341-8번지 → 341-11번지 - 796-5번지 → 796-5번지, 796-11번지 - 809-3번지 → 809-11번지, 809-12번지	필지 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
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계		3,448.9	감) 0.7	3,448.2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277.8	감) 1.8	276.0	8.0	
	준주거지역	3,171.1	증) 1.1	3,172.2	92.0	

■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-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 : 277.8㎡ → 276.0㎡ - 준주거지역 : 3,171.1㎡ → 3,172.2㎡	필지 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 후	
변경	성동구 마장동 339-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성동구 마장동 339-2 일원	3,448.9	감) 0.7	3,448.2	

■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구 역 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성동구 마장동 339-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구역 면적 변경 : 3,448.9㎡ → 3,448.2㎡	필지 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

II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
1. 지구계획의 개요(변경)

- 명 칭 : 성동구 마장동 339-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39-2 일원
- 면 적 : 3,448.9㎡ → 3,448.2㎡ (감) 0.7㎡
-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(변경없음)

■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변경사항	변경사유
-	성동구 마장동 339-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	· 구역 면적 변경 : 3,448.9㎡ → 3,448.2㎡	· 필지 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(변경없음)

3.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

4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주택건설용지	3,171.1	증) 1.1	3,172.2	92.0	임대주택
기반시설용지(도로)	277.8	감) 1.8	276.0	8.0	
합 계	3,448.9	감) 0.7	3,448.2	100.0	-

■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· 주택건설용지: 3,171.1㎡ → 3,172.2㎡ · 기반시설용지 : 277.8㎡ → 276.0㎡	· 필지 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

5. 인구·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

6. 교통·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(변경없음)
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: [붙임] (도면제재생략)

[붙임]

1. 도시·군관리계획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가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 후	
변경	성동구 마장동 339-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성동구 마장동 339-2 일원	3,448.9	감) 0.7	3,448.2	

■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구 역 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성동구 마장동 339-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· 구역 면적 변경 : 3,448.9㎡ → 3,448.2㎡	· 필지 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
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가)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(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계		3,448.9	감) 0.7	3,448.2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277.8	감) 1.8	276.0	8.0	
	준주거지역	3,171.1	증) 1.1	3,172.2	92.0	

■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위 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성동구 마장동 339-2 일원	·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 : 277.8㎡ → 276.0㎡ · 준주거지역 : 3,171.1㎡ → 3,172.2㎡	· 필지 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

나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가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

(1) 획지 결정조서(변경)

구분	획지번호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1	성동구 마장동 339-2 일원	3,171.1	증) 1.1	3,172.2	

■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· 획지 면적 변경 : 3,171.1㎡ → 3,172.2㎡	· 필지 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

나)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(1) 건축물의 용도계획(변경없음)

(2) 건축물의 밀도계획(변경없음)

■ 용적률 적용기준(변경)

[기정]

구분	내용		계획사항	완화 내용	비 고
공공 기여율	공공시설 등 설치·제공 비율	공공 임대 주택	· 기본공공기여율 : 부지면적의 15% 이상 - 3,171.1㎡ × 15% = 475.67㎡ 이상 · 도시계획시설(도로) 폐지 : 181.7㎡ · 토지구획정리사업(도로) 폐지 : 129.9㎡ 폐지도로 면적의 10% 이상 - 311.6㎡ × 10% = 31.16㎡ 이상 · 추가공공기여율 : 완화용적률의 50% 이상 - 완화용적률 : 499.15% - 437.71% = 61.44% · 추가공공기여량 : (61.44%/2) × 3,171.1㎡ = 974.16㎡ 이상 ※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	· 부속토지면적 : 476.22㎡(44세대, 15.02%) · 부속토지면적 : 33.84㎡(3세대, 1.07%) · 부속토지면적 : 195.48㎡(27세대, 6.16%) · 추가공공기여량(용적률산정용면적) : 975.72㎡ (완화용적률의 50.08%)	기본 용적률 400% 상한 용적률 499.15% 부여 모든 항목을 총족 하여야 함
		공공 시설	· 청년지원센터 공공기여(건축물+부속토지)	· 계 : 705.54㎡(74세대, 22.25%) · 공공기여면적(건축물+부속토지) : 306.34㎡(9.66%) - 환산부지면적 : 184.19㎡(건축물면적 936.89㎡) - 부속토지면적 : 122.15㎡	
		건축물 용도 구분	· 15% 이하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 · 주거비율 : 85% 이상	· 주거 : 비주거 = 85.09% : 14.91%(용적률 기준)	
	주택 건설	주택규모	· 전용면적 18㎡ ~ 60㎡ 내외 - 1인 세대 : 전용 18㎡ 이상	· 1인세대 : 전용 18.80㎡, 18.13㎡, 19.63㎡, 19.50㎡, 20.30㎡, 25.34㎡, 25.06㎡	

구분		내용	계획사항	원화 내용	비 고
비중		· 2인 이상 세대 : 전용 36㎡ 이상	(276세대) · 2인세대 : 전용 39.47㎡, 39.09㎡ (70세대)		
건축물 형태	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	·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,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, 에너지 효율 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,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	·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· 친환경 건축물		
주민 공동 시설	커뮤니티 시설	· 100호 미만 : 100㎡ 이상 · 100호 이상 ~ 300호 미만 : 150㎡ 이상 · 300호 이상 ~ 364호 미만 : 200㎡ 이상 · 364호 이상 : (전체건립호-299호) × 2.5 × 1.25	· 지상3층 899.14㎡ 계획 (346세대)		

※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3-2-1 준용

[변경]

구분		내용	계획사항	원화 내용	비 고
공공 기여율	공공시설 설치·제출 비율	· 기본공공기여율 : 부지면적의 15% 이상 · 3,172.2㎡ × 15% = 475.83㎡ 이상	· 부속토지면적 : 476.40㎡(44세대, 15.02%)	기본 용적률 400% 상한 용적률 498.98% 부여	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
		· 도시계획시설(도로) 폐지 : 181.7㎡ · 토지구획정리사업(도로) 폐지 : 131.5㎡ 폐지도로 면적의 10% 이상 · 313.2㎡ × 10% = 31.32㎡ 이상	· 부속토지면적 : 33.85㎡(3세대, 1.07%)		
		· 추가공공기여율 : 완화용적률의 50% 이상 · 완화용적률: 498.98% - 437.68% = 61.3% · 추가공공기여량 : (61.3%/2) × 3,172.2㎡ = 972.28㎡ 이상 ※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	· 부속토지면적 : 195.54㎡(27세대, 6.16%) · 추가공공기여량(용적률산정용면적) : 975.72㎡ (완화용적률의 50.18%)		
		-	· 계 : 705.79㎡(74세대, 22.25%)		
	공공 시설	· 청년지원센터 공공기여(건축물+부속토지)	· 공공기여면적(건축물+부속토지) : 306.39㎡(9.66%) · 환산부지면적 : 184.19㎡(건축물면적 936.89㎡) · 부속토지면적 : 122.20㎡		
건축물 용도 구분	비주거비율	· 15% 이하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	· 주거 : 비주거 = 85.09% : 14.91%(용적률 기준)		
	주거비율	· 85% 이상			
주택 건설 비중	주택규모	· 전용면적 18㎡ ~ 60㎡ 내외 · 1인 세대 : 전용 18㎡ 이상 · 2인 이상 세대 : 전용 36㎡ 이상	· 1인세대 : 전용 18.80㎡, 18.13㎡, 19.63㎡, 19.50㎡, 20.30㎡, 25.34㎡, 25.06㎡ (276세대) · 2인세대 : 전용 39.47㎡, 39.09㎡ (70세대)		
건축물 형태	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	·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,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,	·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		

구분		내용	계획사항	원화 내용	비 고
	조성을 위한 주요정책	에너지 효율 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,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	• 친환경 건축물		
주민 공동 시설	커뮤니티 시설	• 100호 미만 : 100㎡ 이상 • 100호 이상 ~ 300호 미만 : 150㎡ 이상 • 300호 이상 ~ 364호 미만 : 200㎡ 이상 • 364호 이상 : (전체건립호-299호) × 2.5 × 1.25	• 지상3층 899.14㎡ 계획 (346세대)		

※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3-2-1 준용

■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• 공공기여율(공공임대주택, 공공시설 계획 변경) - 공공임대주택 : 705.54㎡ → 705.79㎡ (증) 0.25㎡) - 공공시설 : 306.34㎡ → 306.39㎡ (증) 0.05㎡)	• 필지 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

(3) 건축물의 배치 · 형태 · 색채 · 건축선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4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)

가)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나) 공공기여계획(변경)

구분		공공기여 계획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공공임대주택	기본용적률 적용	476.22㎡ (15.02%)	증) 0.18	476.40㎡ (15.02%)	44세대
	도시계획시설(도로) 폐지	33.84㎡ (1.07%)	증) 0.01	33.85㎡ (1.07%)	3세대
	상한용적률 적용	195.48㎡ (6.16%)	증) 0.06	195.54㎡ (6.16%)	27세대
	계	705.54㎡ (22.25%)	증) 0.25	705.79㎡ (22.25%)	74세대
공공시설 (청년지원센터)	건축물 환산부지	184.19㎡ (5.81%)	-	184.19㎡ (5.81%)	연면적 936.89㎡
	부속토지	122.15㎡ (3.85%)	증) 0.05	122.20㎡ (3.85%)	
	계	306.34㎡ (9.66%)	증) 0.05	306.39㎡ (9.66%)	

■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-	•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시설 면적 변경 - 공공임대주택 : 705.54㎡ → 705.79㎡ (증) 0.25㎡) - 공공시설 : 306.34㎡ → 306.39㎡ (증) 0.05㎡)	• 필지 분할 및 측량결과 반영

5)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: 게재생략

2.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: 해당 없음

3. 방재계획(변경없음)
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

1) 토지세목조서

[기정]

연번	소재지	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
	행정동	지번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지분	권리 명세	권리자	주소	
		본번										부번
1	성동구 마장동	339	2	대	410.0	인트라스제1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	1/1	근저당	하나 캐피탈 주식 회사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20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	
2		339	7	대	215.0			1/1				
3		339	21	대	66.0			1/1				
4		339	22	대	298.0			1/1				
5		341	8	대	105.0			1/1				
6		341	10	대	269.0			1/1				
7		795	6	대	1,076.0			1/1				
8		796	5	대	676.5			1/1				
9		796	8	도로	181.7	성동구	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7	1/1	-	-	-	
10		809	3	도로	1,515.3			1/1	-	-	-	
합계					4,812.5	3,448.9	-					

[변경]

연번	소재지	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
	행정동	지번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지분	권리 명세	권리자	주소	
		본번										부번
1	성동구 마장동	339	2	대	410.0	410.0	인트라스 제1호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 유한회사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(역삼동, 하나금융 그룹 강남사옥)	1/1	근저당	부동산융 합동조합	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(북동)
2		339	7	대	215.0	215.0					신목신용 협동조합	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17 (신정동, 신협빌딩)
3		339	21	대	66.0	66.0					신우신용 협동조합	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2(의정부동)
4		339	22	대	298.0	298.0					대명신용 협동조합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54-1(용두동)

연번	소재지	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
	행정동	지번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지분	권리명세	권리자	주소	
		본번										부번
	5							1/1		남광주신용협동조합	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52(서동)	
5		341	10	대	269.0	269.0		1/1		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8길 1(석전동)	
6		341	11	대	76.0	76.0		1/1		경동신용협동조합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87(제기동)	
7		795	6	대	1,076.0	1,076.0		1/1		남동신용협동조합	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22(만수동)	
8		796	5	대	449.0	449.0		1/1		구로신용협동조합	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1(구로동)	
9		796	11	대	227.5	227.5		1/1		도림신용협동조합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49(신길동)	
		796	8	도로	181.7	181.7		1/1		주식회사 하나은행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(을지로1가) (가산디지털지점)	
10		796	8	도로	181.7	181.7		1/1	-	-	-	
11		809	11	도로	48.5	48.5		성동구	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7	1/1	-	-
12	809	12	도로	131.5	131.5			1/1	-	-	-	
합계					3,448.2	3,448.2	-					

2) 물건조서 : 변경없음

3) 토지취득방법 : 성동구 소유 토지 외 사업시행자 100% 확보

4)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: 사업부지내 건축물,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

5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

1) 공공시설의 종류, 위치 및 규모

구 분	위 치	규 모		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도 로	기점 : 마장동 795-6 종점 : 마장동 796-4	면적 : 277.8㎡	감) 1.8	면적 : 276.0㎡	무상귀속 (기존 공공시설의 대체)
청년지원센터	마장동 339-2 일원	연면적 : 936.89㎡	-	연면적 : 936.89㎡	기부채납

2) 계획기준 및 근거(변경없음)

3)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조서

가) 시행자 귀속분 총괄

구 분			국공유지(㎡)	무상귀속분(㎡)	유상매입분(㎡)	비고
기정	계		359.4	359.4	-	
	도로	마장동 796-8	181.7	181.7	-	
		마장동 809-3	177.7	177.7	-	
변경	계		361.7	361.7	-	
	도로	마장동 796-8	181.7	181.7	-	
		마장동 809-11	48.5	48.5	-	마장동 809-3에서 분할
		마장동 809-12	131.5	131.5	-	마장동 809-3에서 분할

나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

구 분	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(㎡)	비고
기정	계		277.8	
	대지	마장동 796-5	230.0	
	도로	마장동 809-3	47.8	
변경	계		276.0	
	대지	마장동 796-11	227.5	마장동 796-5에서 분할
	도로	마장동 809-11	48.5	마장동 809-3에서 분할

6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: 「주택법」 및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의거, 해당 지자체인 성동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

7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

구 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주택건설용지	3,171.1	증) 1.1	3,172.2	92.0	임대주택
기반시설용지(도로)	277.8	감) 1.8	276.0	8.0	
합 계	3,448.9	감) 0.7	3,448.2	100.0	-